

보 도 해 명 자 료 (13.10.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산업부, 민간 발전소 건설 업체 선정 엉터리”
기사에 대한 입장 (13.10.25, 경향신문 등)

1. 기사 내용

- ☐ 정부가 발전소를 건설할 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해 일부 대기업이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 제기
- ☐ 똑같이 발전소 건설을 포기한 업체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점을 부여하였고 계통여건 등의 항목에서도 동양파위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보도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< 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해 일부 대기업이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>

- ☐ 6차 계획 평가는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을 사전 공개한 후 당일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한 결과임
 - 6차 계획 평가는 유례없이 높은 사업자 경쟁 속에 이루어져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특정업체 특혜는 있을 수 없음
- ☐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음

< 6차 계획에 반영된 GS EPS와 대우건설은 수급계획 반영 후 건설을 포기하였는데도 건설지연 감점 0점, 탈락한 대림건설은 3.5점 감점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>

- ☐ 업체별로 지연감점이 다른 것은 평가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임
 - 건설지연 감점 기준에는 감점뿐 아니라 업체별 계획반영 시점, 발전소 적기 준공 실적*, 건설포기 발전소* 대수 등을 종합하여 감점하도록 되어있음
 - * 적기준공 실적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발전소 건설실적이 전혀 없는 신규업체만 유리하고 기존 발전사업자들만 모두 감점 받는 문제 발생
 - 평가기준에 의해 건설을 포기한 발전소 개수가 적고, 적기 준공 발전소 개수가 많으면 감점 폭이 줄어들게 됨
- ☐ GS EPS 지연감점이 0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
- ☐ 대우건설 지연감점은 0점이나, 이는 6차 계획 감점 대상사업을 건설의향 평가를 도입한 3차 계획 이후의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한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임
 - 1,2차 계획은 현재의 수급계획과 전혀 다른 성격으로 2000년 구조개편을 통한 시장체제 도입에 따라 수급계획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사업자 의향을 평가없이 그대로 반영하였는데,
 - 정보제공 차원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설비소위에서 3차 계획 이후로 대상을 한정
 - 3차 계획부터 건설의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정보제공 차원의 계획에서 벗어나 수급계획의 정책기능 강화
 -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1,2차 계획에 의향을 냈으나 3차계획 수립시에는 의향을 철회하였으므로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

< 탈락한 기업체의 경우 부지와 변전소 거리가 10km에 불과한데 계통여건 평가에서 이보다 훨씬 먼 동양파워, 삼성, 동부하슬라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>

- ☐ 계통여건은 단순히 변전소까지의 거리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
- ☐ 변전소까지의 거리도 일부 영향은 있지만 이보다 신규 발전기 연계시 기술적인 계통상황이 중요(15점)
 - 즉, 신규 발전기 연계시 과부하(인근 공용망 용량 초과), 고장전류 초과(사고발생시 확산 가능성), 발전기 탈락(송전선로 고장시 발전기 정지)이 발생한다면 훨씬 많은 감점
 -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강원지역은 변전소까지의 거리가 멀더라도 일정 설비용량까지는 기술적인 계통상황이 유리한 반면, 변전소거리가 10km에 불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계통이 복잡하고 송전선로 여유가 없으면 계통여건이 불리하게 됨
- ☐ 또한, 건설용이성 평가기준도 변전소까지의 거리 뿐 아니라 건설공기 등 다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(10점)
 - * 예 : 송전선로 거리가 짧더라도 인구밀도가 높은지역은 송전선로 거리가 길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보다 건설이 어려울 수 있음
 - 건설여건은 송전선로 건설공기, 인구밀집도, 기존 송전설비 밀집도, 지자체수, 농경지·자연공원·비행장·자연보존지역 등 송전선로 건설이 어려운 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평가한 결과임

< 동양파워는 바닷가와 3km 떨어져 있어 연료인 석탄과 용수확보가 쉽지 않지만 해안가에 위치한 기업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>

- ☐ 연료 및 용수확보 계획을 평가하는 것이며 단순히 바닷가와 거리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
- ☐ 석탄화력의 경우 사업자가 유연탄을 장기간 자체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바닷가로부터의 거리보다는 장기 석탄 조달 가능성 관점에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무게를 두어 평가할 수 있음
 - 따라서, 유연탄 공급업체·광산업체와 유연탄 장기공급 계약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거나 직접 유연탄 광산개발에 대한 지분투자 등이 진행 중이라면,
 - 바닷가에 위치하고 구체적인 연료 조달계획이 없는 업체보다 평가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임
 - 또한, 발전소가 해안가에 위치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환경부가 고시한 고체연료(석탄)사용금지지역에 해당한다면 연료확보가 용이하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임
- ☐ 발전소에서 필요한 용수는 냉각수(해수)와 공업용수(담수)로 구분되며 냉각수는 바닷가에 인접할수록 유리하나 공업용수는 이와 무관하므로 바닷가와 거리만으로 용수계획의 우열을 단정할 수 없으며, 평가위원들은 계획의 구체성도 함께 평가한 것으로 판단
 - * 공업용수 :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증기생산 등 모든 소내소비 용수
 - 냉각수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부지가 아닌 경우(해안에서 약 5km 이내) 초기투자비가 일부 증가하는 단점은 있으나 해수 공급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

- 공정수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**인근지역에 개천, 강, 하수처리장 등이 인접하여야 유리**하게 되며, 바닷물을 공정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담수화 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
- 재무능력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**평가당시의 객관적 재무지표를 토대로 평가** 실시한 것임

※ 관련 문의 :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(02-2110-4897), 성 시내 사무관(5529)